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85
----------	-------

발의연월일 : 2025. 09. 04

발 의 자 : 이용우 · 임미애 · 박은정

박 정 · 김남근 · 이학영

김성희 · 최혁진 · 김태선

김남희 · 신장식 · 정혜경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6세~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 대상이 8세까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 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1항 단서 신설).
- 라.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추
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6항 신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3세”로, “10만원을”을 “20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3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3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3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을</u>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u>13세</u> ----- <u>20만</u> 원을----- <u>. 다만,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② ~ ⑤ (생 략)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13세-----

-----.

② -----

-----13세-----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⑤ -----

-----13세-----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13세-----

-----.

